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635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나목 중 “8미터”를 “10미터”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 1.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 2. 시·도지사: 관할 개발제한구역에서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 3. 시장·군수·구청장: 관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관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청원경찰. 이 경우 배치 인원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및 부산권(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를 말한다): 개발제한구역 면적 5제곱킬로미터당 1명

나. 가목 외의 지역: 개발제한구역 면적 10제곱킬로미터당 1명

제41조의2제2항 중 “자에 대하여는 입주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까지”를 “자 및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주시기나 완료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 또는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까지”로 한다.

별표 1 제2호과목가) 중 “공급시설”을 “공급시설,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로 한다.

별표 1 제3호아목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에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하수 찌꺼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에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별표 1 제3호저목을 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저목 및 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부대시설로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처. 청소차 공영차고지 및 부대시설	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차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가도로 또는 고가철도의 노면 밑의 부지를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부대시설은 사무실, 차고설비, 차고부대시설, 휴게실 및 대기실만 해당한다.

별표 1 제5호가목1)라)③ 중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4846호, 2017. 8. 9. 공포, 2018. 2. 10.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고,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 및 부산광역시 등 부산권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5제곱킬로미터당 1명 이상, 그 외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면적 10제곱킬로미터당 1명 이상의 인원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배치하도록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에서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정비사업 완료시기까지 훼손행위의 시정을 위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의 촉진 및 대기환경 보호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버스 차고지 부대시설에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총 리 령

●총리령 제144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2월 9일

국 무 총 리 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